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31
----------	-----

2024. 3. 22.(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자 : 임병운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4년 3월 5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3월 6일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4년 3월 14일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임병운 의원)

가. 제안이유

- 충북형 도시농부 참여자 범위 확대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충청북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문의 통일성을 위해 조례의 대상을 명확히 함 (안 제1조)
- 현행 비농업인으로 규정된 참여자 범위를 유휴인력으로 개정하여 참여자 확대 도모 (안 제2조, 제3조)
- 인력지원 대상을 생산자단체까지 확대 (안 제7조)
- 재난피해 복구지원 참여자에 대한 특례 신설 (안 제9조의2)
- 도시농부의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가. (필요성) 충북형 도시농부 참여자 범위 확대에 대한 도민의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상위법과 지원범위를 동일하게 하고 재난복구에 도시농부의 활용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나. (타당성) 이에 따라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에 명시된 사항을 정비하고 재난피해 복구지원 참여자에 대한 특례, 도시농부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사항을 봤을 때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법적합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라. (종합의견)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도시농부 참여자와 수혜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농촌 일손 부족 해결과 도시민 일자리 제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내·외부적으로 한 단계 진화하고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짐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도시농부 참여자 및 지원농가 등과 소통하며 다양한 요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비농업인”을 “충북형 도시농부”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비농업인”을 “유휴인력”으로 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비농업인”을 “유휴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 참여자”를 “농업활동에 참여하는 충북형 도시농부(이하 “참여자”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신청”을 “유휴인력의 신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생산자단체

제9조제1항 중 “농업활동에 참여한 중복형 도시농부(이 조 및 제10조에서 “참여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일부”를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재난피해 복구지원 참여자에 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등에 대한 피해복구에 중복형 도시농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등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등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에 참여한 중복형 도시농부에게 해당 인건비의 전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 자연재해의 종류와 범위, 기준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도시농부의 진흥)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진흥에 기여한 개인·법인·단체 및 공무원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비농업인</u>의 농업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u>비농업인</u>”이란 농업경영을 하지 않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유희인력으로서, 「<u>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p> <p>4. “<u>충북형 도시농부</u>”란 충청북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농업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지원한 <u>비농업인</u>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u>충북형 도시농부</u>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u>비농업인</u>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p>	<p>제1조(목적) ----- <u>충북형 도시농부</u>-----</p> <p>-----</p> <p>-----</p> <p>-----</p> <p>-----.</p> <p>제2조(정의) -----</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생산자단체</u>”란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 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p> <p>4. -----</p> <p>-----</p> <p>----- <u>유희인력</u>-----</p> <p>-----</p> <p>-----.</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p> <p>-----</p> <p>----- <u>유희인력</u>-----</p> <p>-----</p>

고,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 참여자의 원활한 모집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충북형 도시농부 선정 등)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신청을 받아 충북형 도시농부를 선정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7조(인력지원 대상 등) ① 충북형 도시농부의 인력지원 대상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생략)

<신설>

2. (생략)

② ~ ③ (생략)

제9조(인건비 보조 등) ① 시장·군수등은 농업경영체등이 농업활동에 참여한 충북형 도시농부(이 조 및 제10조에서 “참여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 농업활동에 참여하는 충북형 도시농부(이하 “참여자”라 한다)-----

제5조(충북형 도시농부 선정 등) ① ----- 유휴인력의 신청-----.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인력지원 대상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생산자단체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인건비 보조 등) ① -----
-----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② ~ ⑤ (생략)

<신설>

<신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재난피해 복구지원 참여자에 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 등에 대한 피해복구에 중복형 도시농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등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등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에 참여한 중복형 도시농부에게 해당 인건비의 전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 자연재해의 종류와 범위, 기준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도시농부의 진흥)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진흥에 기여한 개인·법인·단체 및 공무원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관련법령 발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2015.12.22.>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 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2. 비용 발생 요인

- 임금, 보험 가입비, 교통비 등(조례안 제8조, 제9조)
- 도시농부의 진흥(조례안 제12조)

3. 관련조문

- 안 제7조(인력지원 대상 등)
- 안 제8조(사업지원)
- 안 제9조(인건비 보조 등)
- 안 제12조(도시농부의 진흥)

4. 비용 추계결과

- 재정수반요인 :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소요예산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으로 함
- 추 계 결 과 : 1.2억원(도비)
- 재원조달방안 : 도비, 시군비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함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농정국 농업정책과장 반주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세 입						
세 출	10,740	2,685	2,685	2,685	2,685	
기존 사업비	10,620	2,655	2,655	2,655	2,655	
추가 사업비	120	30	30	30	30	
재원 조달	10,740	2,685	2,685	2,685	2,685	
도비	소 계	3,306	826.5	826.5	826.5	826.5
	기존 사업비	3,186	796.5	796.5	796.5	796.5
	추가 사업비	120	30	30	30	30
시군비	소 계	7,434	1,858.5	1,858.5	1,858.5	1,858.5
	기존 사업비	7,434	1,858.5	1,858.5	1,858.5	1,858.5
	추가 사업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